

## 【 6 】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1. 22.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 제안이유

-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공포 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법률에서 위임한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3조)

다. 협의회의 설립절차 및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정함 (안 제4조, 제5조)

- 라.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회원의 가입 및 탈퇴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마. 회원의 제명의결시 사전에 제명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바. 협의회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임하도록 하고 대표자 및 협의회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규정함  
(안 제8조)
- 사. 협의회와 군수는 매년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고 합의사항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 아.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의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대표자·협의회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 자.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 차.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 카.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군의회사투과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과·소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특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본청 각 실·과·소 및 직속기관, 하부기관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뒤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별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

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 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3항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일기로 한다. 다만, 잔여일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군수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군수와의 협의) ①협의회와 군수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군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군수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군수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군수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군수는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군수는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와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내용의 이행) 협의회와 군수는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군수와의 협의는 협의회와 군수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들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대 표 자		성명	성명
		직급	직급
		근무부서	근무부서
회원		○ ○ ○ 의결	
일시			
장소			
설립총회 개최현황	참석회원수		
	결의사항	○ ○ ○ 의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양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회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To	정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1991. 11. 10.

양 주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정 칭	
대표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	
보 완 이 우	
보 완 기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같이 보  
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및규칙(표준안)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도지사·군수·자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별령·훈령 또는 사루본 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별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비·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

## 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할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경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할은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회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경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경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일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을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달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협의사항

제11조(협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들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三 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정	첨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회 원	○○○회	정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 시	
	장 소	
	참석회원수	○○○회
	결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구하		
<b>&lt;첨부서류&gt;</b>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회부 · 회원명부(스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별,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5011-15011보  
98.12. 9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종)>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등)

인

15011-151114  
98.12. 9승 인210mm×297mm  
<한국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15011-15211일  
98.12. 9승인

210mm × 297mm  
<한국반용지60k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위 본인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귀하

15011-15311호  
98.12. 9승인210mm × 297mm  
<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종)>

## ●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制定 1998. 2. 24. 法律第5516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務員의 勤務環境 개선·業務能率 향상 및 苦衷處理등을 위한 職場協議會의 設立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設立)** ①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및 그 下部機關에 근무하는 公務員은 職場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議會는 機關單位로 設立하되, 하나의 機關에는 하나의 協議會만을 設立할 수 있다.

③ 協議會를 設立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所屬機關의 長(이하 “機關長”이라 한다)에게 設立事實을 통보하여야 한다.

**第3條 (加入範圍)** ① 協議會에 加入할 수 있는 公務員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6級이하의 一般職公務員 및 이에 준하는 研究·特殊技術職列의 一般職公務員
2. 特定職公務員 중 6級이하의 外務公務員
3. 技能職公務員
4. 雇傭職公務員
5. 第1號의 一般職公務員에 상당하는 別定職公務員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公務員法 第66條第1項 但書 및 地方公務員法 第5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運動이 허용되는 公務員과 指揮·監督의 職責이나 人事·豫算·經理·物品出納·秘書·機密·保安·警備 또는 自動車運轉 기타 이와 유사한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協議會에 加入할 수 없다.

**第4條 (加入 및 脫退의 자유)** 公務員은 자유로이 協議會에 加入하거나 協議會를 脫退할 수 있다.

**第5條 (協議會의 機能)** ① 協議會는 機關長과 다음 各號의 사항을 協議한다.

1. 當해 機關固有의 勤務環境 개선에 관한 사항
2. 業務能率 향상에 관한 사항

第5編 國家公務員 第4章 服務·能率·教育訓練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3. 所屬公務員의 公務와 관련된 일반적 苦衷에 관한 사항

4. 기타 機關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協議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함에 있어서 協議會構成員의 職級등을 고려하여 協議會構成員의 의사로 고루 代辦할 수 있는 協議委員을 選任하여야 한다.

第6條 (機關長의 義務) ①機關長은 協議會가 文書로 명시하여 協議를 요구한 경우 이에 성실히 臨하여야 한다.

②協議會와 文書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機關長은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機關長은 協議會의 組織 및 운영과 관련하여 所屬公務員에 대하여 불리한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細部事項) 協議會의 設立單位·加入範圍 기타 協議會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協議委員의 選任·協議會의 協議節次·時期·방법 기타 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정한다.

#### 附 則

이 法은 199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